

부 산 가 정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6드단14696 위자료
원 고 갑 (1985년생, 여)
부산
피 고 을 (1989년생, 여)
부산
소송대리인 변호사
변 론 종 결 2017. 3. 9.
판 결 선 고 2017. 3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0. 15.부터 2017. 3. 2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원고와 소외 문
중환은 2012. 1. 20.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(2012년생)을 두고
있는 사실, 피고는 2012. 10.경부터 A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A과 만나 잠자리를
갖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등 2013. 11.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, 피고는 A
과 부적절한 교제기간 중 원고에게 A과 자신의 관계나 원고와 A의 이혼문제, 문지율
의 양육 문제 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나 카톡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스
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, 원고는 A과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 및 A의 경제적
무능력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A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드단7510호로 이혼 등 소
송을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4. 11. 4. 원고와 A은 이혼하고, 문지율의 친권자 및
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14. 12. 2.경 확정
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A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
탄되었다고 할 것이고, 원고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
칙상 명백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
다.

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와 A의 혼인기간, 자녀 수, 피고와 A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그 내용, 위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, 혼인 파탄의 경위와 과정, 원고와 피고의 나이,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,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.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. 10. 15.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. 3. 2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상현